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 및 공무원근로자에 대한 노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입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5급 또는 연구관 2명, 6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을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에 국가하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환경부에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 ~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8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의 검역

제5장의4에 제3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11(야생동물검역센터) ①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원장 소속으로 야생동물검역센터를 둔다.

②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0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별표 4 중 총계 “1,855”를 “1,8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855”를 “1,87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25”를 “1,838”로, 전문경력관 “12”를 “14”

로 한다.

별표 8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60조제9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8(직무) 국립야생동물질 병관리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이하 이 조에서 “야생동물 질병”이라 한 다)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다 음 사무를 관장한다. 1. ~ 8.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34조의8(직무)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u>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 은 제외한다)의 검역</u> <u>제34조의11(야생동물검역센터) ①</u> <u>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의 검역에 관한 사무</u> <u>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u> <u>물질병관리원의 원장 소속으로</u> <u>야생동물검역센터를 둔다.</u> <u>②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센터장</u> <u>1명을 두며, 센터장은 연구관으</u> <u>로 보한다.</u> <u>③ 센터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u> <u>관리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u> <u>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u> <u>을 지휘 · 감독한다.</u>
제60조(한시정원) ① ~ ⑧ (생	제60조(한시정원) ① ~ ⑧ (현행

략) <u><신 설></u>	과 같음) <u>⑨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u>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4]

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855</u>	<u>1,870</u>	+15
일반직 계	<u>1,855</u>	<u>1,870</u>	+1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825</u>	<u>1,838</u>	+13
전문경력관	<u>12</u>	<u>14</u>	+2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5